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3)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8. 12. 11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8. 12. 14
- 라. 위원회 상정 : '98. 12. 24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행정규제 개혁의 기본방향등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위원회는 구청장 소속하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음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 송원수)

-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1998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4조 위원회 구성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부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의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과반수가”를 “과반수 이상이”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 또 제11조 위원회 수당등 중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부분에서 본 조례안 제8조 제6항에 따라 “참석자”를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로 함이 타당하여 이를 수정가결 함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제안년월일 : '98. 12.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의 각종 행정규제개혁의 기본방향등을 심의·조정하고
- 규제의 심사, 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 구청장 소속하에 둠(안 제2조)
-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6개사항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위원중 호선)포함 12인 이내
- 규제신고센타 설치 운영(안 제10조)

3. 근거법규

- 행정규제기본법('98. 3. 1일 시행, 법률 제5368호) 제3조제3항

4. 제정조례안 : 붙임

5. 기타사항

- 입법예고 : '98. 10. 28 ~ '98. 11. 16(공보 및 일간신문 게제).
- 입법예고 결과 : 다른의견없음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구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